

민원사무명	옥외광고사업 등록 신청(신고)				
민원내용	옥외광고사업을 신규 및 재개업, 휴업, 폐업 하려고 하는 민원				
근거법규	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, 제47조				
주관부서	도시공원과	협조부서 (기관)	세무과(면허세 관련)	처리 기간	7일
현장조사사항	신규 및 재등록시 현장 확인				
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 청 ⇒ 접 수 ⇒ 검토 및 현지조사 ⇒ 결 재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위임전결 : 과장)</p>				
구비서류	<p>&lt;민원인 제출서류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옥외광고사업 등록신고서 1부</li> <li>2.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</li> <li>3. 신규등록 및 재개업 시 :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</li> <li>4. 휴.폐업 신고 시 : 옥외광고사업 등록증</li> </ol>				
관련부서 (기관) 협조사항	관련부서명	협 의 사 항			
	없 음				
후속 이행사항	후속민원명	절 차	시 기	처리부서	조치사항
	없 음				
수수료 및 제반경비	인천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28조에 의거 부과 (신규등록 : 15,000원 재개업, 휴업, 폐업 : 수수료 없음)				
관련후속 이행사항	옥외광고사업 등록증 교부				